

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1PP
----------	-----

제출 년월일 : 2001. 03. 29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현 평창군 고용직 총 정원은 1명으로 이에 대한 현원은 없으며, 2차 구조조정에 따른 금년 상반기 정원조정 시 고용직 정원의 감축이 강원도와 협의되어 있어 본 조례의 필요성이 없게 되므로 폐지 하려는 것임.
- 아울러 2000년 강원도종합감사시에 본 조례를 폐지토록 시정되어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(폐지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 법령 : 해당없음
- 나. 예산 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관계부처승인 : 필요없음
- 라. 입법 예고 : 필요없음
- 마. 신구조문대비표 : 필요없음

평창군조례 제 호

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

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